

국립공주박물관 □□□□과장 비위혐의 조사결과 보고

□ 사건개요

- (일시 및 장소) 2018.2.1.(목) 국립대구박물관 사무실 및 주차장 입구
- (대상자) 가해자(공주박물관 □□□ □□□□과장), 피해자(대구박물관 □□□ □□□□실장, □□□ 주무관)
- (내 용) 가해자는 출장지에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포옹 또는 어깨를 감싸면서 불에 입(ㅼㅼ)을 맞추려 함

□ 조사결과

- (피해자) 가해자의 성희롱·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당황 및 불쾌했으며, 묵**할 수 없는 행동이었음
 - * 현재 시국이 검찰청 사건 등 매우 예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언행에 대한 조심성이 없었으며, 타 소속기관 출장을 와서 이러한 성희롱·성추행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고, 사과하는 선에서 무마되거나 해결될 문제는 아님
- (목격자*)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상하고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함
 - * 출장 동행자(4명) 중 3명이 목격하였으며, 3명중 2명의 진술임
- (가해자) 부적절한 성희롱·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인정* 함
 - * “피해자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것”이라고 생각함. 다만 그 당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
- ☞ 피해자(목격자) 진술 및 가해자의 인정 등 종합해 볼 때,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되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(품위 유지의 의무)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2조(성희롱의 금지) 위반

□ 조치계획

- 올바른 품행 및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□□□□과장으로서 문체부 행동강령에 위배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되어 ‘징계’ (경징계 이상) 요구